

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22. 2. 8 선고 2021가단782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---

## 전 문

원 고 A 유한회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퍼스트

담당변호사 양동혁, 임선영, 홍승재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장승호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2. 1. 11.

판 결 선 고 2022. 2. 8.

## 주 문

1. 피고와 C(D생)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/15 지분에 관하여 2017. 5. 23.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을 취소한다.
2. 피고는 C에게,
  - 가.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2/15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울진등기소 2017. 11. 30. 접수 제1313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,
  - 나.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2/15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## 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## 이 유

### 1. 인정사실

가. 원고는 2010. 7.경 C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울진군법원 2010가소1393호 양수금의 소를 제기하였다. 울진군법원은 2010. 8. 18. ‘C는 원고에게 12,841,818원과 이에 대하여 2003. 10. 25.부터 2010. 7. 17.까지는 연 17%,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’는 판결을 선고하였고, 위 판결은 2010. 9. 8. 확정되었다(이하 위 채권을 ‘이 사건 판결금 채무’라 한다). 원고는 2020. 4.경 C를 상대로 울진군법원 2020차전101호로 위 판결금 채권에 기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, 울진군법원은 2020. 4. 20. ‘C는 원고에게 12,841,818원과 이에 대하여 2003. 10. 25.부터 2010. 7. 17.까지는 연 17%, 그 다음날부터 2019. 5. 31.까지는 연 20%의, 2019. 6. 1.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’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였다.

나. C의 부 E은 1980. 2. 20.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토지’라 한다)에 관하여 1974. 5. 7.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 E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건물’이라 하고, 위 토지와 통칭할 때 ‘이 사건 각 부동산’이라 한다)에 관하여 건축물대장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었고, 위 건물의 사용승인일은 1941년이다.

다. E은 2017. 5. 23. 사망하였고(이하 ‘망인’이라 한다), 망인의 공동상속인들로 배우자 F, 자녀 피고, G, C, H, I, J이 있다.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은 2017. 5. 23. 망인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의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(이하 ‘이 사건 분할협의’라 한다)을 체결하였고, 그에 따라 피고는 2017. 11. 30.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,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마쳤다.

라. C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별다른 적극 재산이 없었고,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 채무 뿐만 아니라, K회사에 7,897,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.

[인정 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10호증(가지번호 포함, 이하 같다)의 각 기재, 울진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, L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

## 2. 판단

### 가.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채무초과상태인 C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인 각 2/15 지분을 포기하고, 피고에게 해당 지분을 이전하여 주기로 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.

### 나.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

피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.

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,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,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(대법원 2006. 7. 4.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).

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.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.

### 다.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

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

등기명의를 회복하는 방법으로는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도 허용되고,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취소목적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수익자로부터 채무자 앞으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(대법원 2000. 2. 25.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).

따라서 C의 상속지분인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2/15 지분에 관하여,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.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, 이 사건 토지 중 2/15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울진등기소 2017. 11. 30. 접수 제1313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, 이 사건 건물 중 2/15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### **3. 결론**

그렇다면,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김선역

## 별지

1. 경북 울진군 M 대 129㎡
2. 경북 울진군 M 지상 흙벽돌조 슬레이트지붕 단층주택 23.1㎡  
[도로명주소] 경북 울진군 N

